

서 면 답 변 서

질문의원	류 한 철 의원	답변부서	건설과
질문제목	조례 제 · 개정에 따른 부칙 규정은 ?		
☐ 질문요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중 부칙에서 “공포한 후 30일 경과,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날짜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? ☐ 답변내용 ○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칙사항 중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는 것은 복구 원인자에게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기간을 두어 알림으로서 원인자가 개정사항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담금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○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부칙 사항중 3월이 경과 후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공사가 대형공사장으로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· 검토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 준비기간이 상당 소요되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어 원인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			

작성자 건설과장 우 범 찬 